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8. 8 선고 2022가단1370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

담당변호사 심상범, 조정관

변 론 종 결 2023. 6. 13.

판 결 선 고 2023. 8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: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2020. 1. 10.자 부동산 매수대금 증여계약은 2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 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가. 주위적 청구원인

- 1) 원고는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92562 양수금 채권(이행권고결정 2006. 6. 20. 확정)의 최종양수인으로서 C에 대하여 2022. 8. 2. 기준 35,006,554원의 채권이 있다.
- 2)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C로부터 2020. 1. 10.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받고 위 대금으로 같은 날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. 3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3) C는 위 매수대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대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며, 피고는 C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- 4)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2020. 1. 10.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증여계약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일부인 20,000,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, 가액배상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예비적 청구원인

- 1) C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- 2)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유형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만 C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.
- 3)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

20,000,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.

2.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도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. 6. 20.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22. 8. 5.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설령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가 피고에게 2022. 1. 10.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C가 피고에게 2022. 1. 10.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, 달리 피고가 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[피보전채권 시효완성 주장과 관련하여서는,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,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,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10151 판결),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는 보지는 아니한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덕기

별지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동
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5층

[도로명주소]

경기 용인시 기흥구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 28456.0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873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28456분의 58.854

끝.

